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

제정일: 2016.01.01.
최근개정일: 2023.08.16.
주관부서: 산학협력단

제1조〔목적〕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산학협력중점교원(이하 '산학교원'이라 한다)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〔정의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 · 취업 지원, 다양한 산학연계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〔적용범위〕 이 규정은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한 자 및 지정된 자에게 적용되며,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〔유형구분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.

1.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하는 전임교원(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)
2.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하는 전임교원(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)

제5조〔신규임용 자격〕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초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민간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산학협력 교육활동 또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주 및 신기술 개발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정무직 또는 국가 고위공무원단 경력자
2.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법인의 임원 이상 경력자
3. 정부출연 및 기업 연구소 또는 저명민간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경력자
4.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본교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자(비전임교원 이상인 자)
5. 상기 조건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지닌 자

②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6조〔전임교원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〕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소속 단과대학장, 교육대학원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은 학과별 1인 이내로 제한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④ 산학협력중점교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7조〔임무〕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가진다.

1. 외부기관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전략에 대한 연구와 교육

2. 학생들의 창업 및 취업지원에 활동 전략 수립 및 교육
3. 교원의 외부기관 연구과제나 용역 수혜를 위한 활동 전략 수립
4. 외부기관 인력의 재교육과 외부기관으로서의 기술이전 및 자문 활동
5. 대학 보유 기술의 상품화 및 대학발전기금의 모금 활동
6. 대학과 외부기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및 전략 수립
7. 기타 대학이 부여하는 외부기관과의 상호 협력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활동
8.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의 개발 활동

② 지정형 및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강의책임시수는 주당 6시수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별도로 정할 수 있다(2017. 02. 28.개정).

③ 타 기관 출강을 할 수 없다. 다만, 특강은 예외로 한다.

제8조〔임용원칙〕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9조〔임용시기 및 방법〕 제3항 및 전임교원경력경쟁채용 등 시행세칙에 의거 전임교원경력채용 등을 할 수 있다(2023. 8. 16.개정).

제9조〔임용기간〕 ① 신규 임용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계약임용은 재계약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③ 임용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(계약)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
제10조〔임용직급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다.

제11조〔임용계약〕 ① 신규임용은 계약에 의하며, 임용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

② 임용 기간은 서면으로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(2017. 02. 28.개정).

1. 임용 기간
2. 연봉
3. 재계약임용 조건
4. 책임 강의시수
5. 임용 기간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
6. 기타 임용조건

③ 체결된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〔제출서류〕 신규임용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임용지원서(본교양식)
2. 경력증명서
3. 산학협력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
4. 연구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
5. 졸업 및 성적증명서
6. 각종 자격증 사본
7.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
8.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

제13조〔발령일자 소급금지〕 교원인사규정 제3조를 적용한다.

제14조〔임용결격 및 사유〕 교원인사규정 제4조를 적용한다.

제15조〔임용절차〕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적용 및 경력경쟁채용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(2023. 8. 16.개정).

제16조〔재(계약)임용 기준〕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재(계약)임용기준은 교원업적평가는 〈별표 1〉의 결과에 의한다.

② 계약기간 중 진행 사업의 폐지, 계약파기 또는 사회 통념상의 부정행위(성범죄, 금품 · 향응 수수, 징계처분, 논문표절, 임용 제출서류 허위 등)를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7조〔재(계약)임용 절차 및 심사〕 비정년트랙전임교원규정 제13조를 적용한다.

제18조〔업적평가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원업적평가는 〈별표 1〉에 의거 매 학기 시행한다.

제19조〔복무〕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복무는 교원인사규정, 교직원 복무규정 및 본교 규정에 준용한다. 단 교원인사규정 제6조, 제15조, 제16조,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회의 참여를 불허한다. 단 소속기관장, 회의 주관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중점교원 휴직은 불허한다. 단, 법인정관 제40조의 제1항, 제7항은 예외로 한다.

제20조〔처우〕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보수는 계약조건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 체결 시 연봉으로 정한다.

제21조〔보칙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며,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이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(2016. 8. 31.신설).

부칙

① **〔시행일〕**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**〔시행일〕**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**〔시행일〕**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**〔시행일〕** 이 규정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평가 기준

분야		평가항목	점수/학기당	비고
소속부서 평가	산학협력	• 외부기관의 연구과제나 용역 수혜 실적 (10점/2,000만원 당) • 산학협력 MOU 체결 실적(5점/건) • 산학협력 행사 개최 실적(2점/건) • 기타 산학협력 활동 및 실적(1점/건) • 계약학과 MOU 체결 실적(1점/인) - 입학기준 ※ 산학협력 평가는 산학협력중점 교원의 임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	50 (80)	
	교육/인력양성	• 외부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전략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실적(5점/건) • 취업 및 창업지원 활동 실적(5점/인) • 수업 관련 산업체 방문 및 기술지도 실적(3점/인) • 기타 교육/인력양성 활동 및 실적(3점/인) • 취업동아리 지도(3점/학기) • 학생창업지도(3점/학기) • 학생창업(5점/건)	30	
부서장 평가		• 교원 활동, 공헌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 • 강의평가결과 및 교재개발 등 (강의평가 만점 기준 50% 이하일 경우 학기당 20점 중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)	20	
교원인사담당부서	연구실적	• 본교 연구업적 평정표에 의한 연구실적(점수 결과) - 예, 체능분야 연구업적 평적표 연구실적은 인정 안함	(최대 10점)	
합 계				

※ 산학협력 중점교원으로 지정된 전임교원의 교원업적평가는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.